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148)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관련 규정 명확화(차규근의원안)	3

I. 개요

1. 차규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148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차규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12. 31.
- (3) 회 부 일 : 2025. 1.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유튜버, 영상크리에이터 등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미디어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분배받는 광고수익, PPL 광고수익 및 시청자가 지불하는 후원금, 지원금, 회원비, 활동비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최근 새로이 급증한 신종 업종으로서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해당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특히,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미디어콘텐츠에 본인의 은행계좌를 명시하고, 이를 통하여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해당 행위로 벌어들인 수입 역시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미디어콘텐츠창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광고 수입은 물론, 후

원금·지원금·회원비·활동비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법률에 명확히 하고, 미디어 콘텐츠에 계좌를 공개하여 후원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계좌를 신고하고, 신고된 계좌만을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과세제도를 명확히 알리고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60조의6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과세 관련 규정 명확화(차규근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관련 규정 명확화 (「소득세법」 제19조 등) ○ 대상: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공개계좌 신고·사용의무 : 미디어콘텐츠창작 사업자가 계좌를 공개하여 시청자로부터 금전을 취득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 공개계좌 신고 사용 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가 공개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청자로부터 금전을 취득한 경우 가산세 부과 : 가산세율 5% ○ (시행일) 이 법 공포 후 3개월

* 차규근의원안 2024. 12. 31. 제출(의안번호 7148)

□ 개정안은 미디어콘텐츠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규정등을 정비하여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함. 유튜브, 아프리카 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

며 등이 존재하며, 주요 소득 원천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 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이 주요 원천임. 1)현재 유튜버, 1인 미디어 창작자 등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자 등 물적시설²⁾의 유무에 따라, 정보통신업 중 미디어 콘텐츠창작업자(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921505)이거나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940306)에 해당하여 사업자 등록 및 과세 의무가 부여됨.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개황]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전년대비	
				성장률
기업수	11,123개	13,514개	+2,391개	+21.5%
매출액	4조 1,254억 원	5조 3,159억원	+1조 1,906억원	+28.9%
종사자 수	35,375명	42,378명	+7,003명	+19.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인 미디어 콘텐츠 관련 산업의 종사자 수와 관련 매출액은 가파른 상승추세이며, 202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1만 4,558명으로 평균 3,300만원, 창작자 중 상위 10%는 평균 1억 8,8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일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자가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는 경우³⁾가 발생하고 있고, 세금 감면 지

1)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 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음.

출처: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시설의 범위)

영 제42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온라인을 퇴폐적 유흥문화로 물들이는 엑셀방송(출연 BJ들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를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 문서처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 학생들을 도

역내에 허위 공유 오피스 사무실을 만들어 탈세를 시도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특히 성상품화 논란 등이 있는 엑셀방송 운영 BJ의 경우 연 수 백억원의 소득을 올리기도 하며,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하였음.⁴⁾

□ 개정안은 위와 같이 소득세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명칭에 상관없이 미디어콘텐츠창작과 관련하여 발생한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은 모두 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계좌를 공개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미디어콘텐츠창작업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세금의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과 같이 사업소득 내에 미디어콘텐츠창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명시하는 경우, 법률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범위가 특정되어 세원의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일례로, 2023년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 관련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 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거짓세금 계

박의 텃으로 유인하는 도박사이트 등의 확대

4) 치명적 유혹, “사이버 뽕살롱”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운영자 세무조사, 국세청, 2025.3.5.

산서를 수취한 유튜버 등의 탈루혐의가 확인된 바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후원금 수입 및 광고 수입’ 등에 대해서도 법률상 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소득의 고의적 축소 신고등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송화면에 은행계좌를 띄워 벌어들인 후원금 수입 역시 세원의 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최근 일부 정치 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수익 신고 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자기 계좌를 공개하여 시청자로부터 금전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과세관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경우,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들의 소득 적정성을 원활히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법상 미디어콘텐츠에 관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0호는 ‘정보통신업⁵⁾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하나로 신설하는 것은 가외적인 측면이 있음. 특히 후원금 등 시청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은 사업과 관련된 금액으로 사업소득 계산 시 포함됨.

5)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정보통신업을 정보 및 문화 상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산업활동, 정보 및 문화 상품을 전송하거나 공급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통신서비스 활동, 정보 기술 자료 처리 및 기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둘째, 미디어콘텐츠창작 사업자의 공개 계좌 사용 의무는 여타 직군과의 형평성 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미디어콘텐츠 창작 사업자가 계좌를 공개하여 금전을 취득하려는 경우 동 계좌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계좌를 신고 및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⁶⁾⁷⁾ 해당 기준은 산업군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등을 기

6)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정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7) 「소득세법」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산업군의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계좌를 공개 및 신고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후원금 등에 한하여 별도의 계좌 신고 사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여타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 및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58